



제 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스포츠 권리 명확화 및 스포츠 소외계층 구체화 등〉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95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민의 권리 명확화 및 스포츠 소외계층 구체화	2
2. 스포츠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차별 없는 스포츠 복지 증진 의무 신설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조계원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2026. 3. 6.
3. 회 부 일: 2026. 3.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스포츠에서 차별받지 않고, 국가 등은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 시 스포츠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포츠에서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리고 스포츠 소외계층이 누구인지 불명확하고, 남성 중심의 체육계 관행으로 인해 선수와 지도자의 성비 불균형, 여성 선수와 지도자의 고용 및 노동에 있어서 불평등·경력단절 등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

이에 성별·종교 등 스포츠 활동 시 차별받지 않는 대상을 열거하고, 저소득층·노인 등 스포츠 소외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스포츠 정책 수립 시 차별 없는 스포츠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국민과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권을 확대하고 스포츠계의 구조적인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

Ⅲ. 검토의견

1. 국민의 권리 명확화 및 스포츠 소외계층 구체화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스포츠 활동 시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 대상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안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여야 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이하 “스포츠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4조(국민의 권리)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스포츠를 향유하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이하 “스포츠권”이라 한다)를 가지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스포츠를 향유하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 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개정안은 스포츠권 향유를 위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 대상을 성별, 종교, 인종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¹⁾하고, 스포츠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스포츠 소외계층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취지를 명확히 하여 현행법의 기본이념²⁾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1) 개정안과 유사하게, 「문화기본법」에서도 문화를 향유할 때 차별받지 않는 대상을 열거하고 있음.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2) 「스포츠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자유롭게 평등하게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포츠의 가치가 교육, 문화,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스포츠의 다양성, 자율성과 민주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안 제4조에 따라 차별 금지의 원칙이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경우 스포츠권이 보다 명확하게 보장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수용하는 입장이나,

안 제5조와 관련하여 ① “스포츠권”이라는 보편적 권리 보장 범위를 구체화하는 경우 국민 일반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고, ② 현행법 제5조는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 권리 등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통령령에서 스포츠 소외계층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하여 구체화할 정책적 필요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스포츠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차별 없는 스포츠 복지 증진 의무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스포츠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차별 없는 스포츠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스포츠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 6. (생략) <u><신설></u> 7. (생략)	제7조(스포츠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 원칙) ----- ----- ----- -----. 1. ~ 6. (현행과 같음) <u>6의2. 차별 없는 스포츠 복지가 증진 되도록 할 것</u> 7. (현행과 같음)
제8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1. (생략) <u><신설></u> 12. ~ 14. (생략)	제8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1. (현행과 같음) <u>11의2. 차별 없는 스포츠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u> 12. ~ 1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스포츠권 보장,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안전사고 방지, 스포츠 국제 교류·협력 증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스포츠 정책 기본방향, 제도 기반 조성, 스포츠권 향상 시책, 인력 양성, 스포츠 유산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개정안은 스포츠 정책과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차별 없는 스포츠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외 계층의 스포츠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스포츠계의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스포츠 향유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75